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79호 2015. 1. 28.(수)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145호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146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147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사천시 조례 제1148호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사천시 조례 제1149호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16
- 사천시 조례 제1150호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2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4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 를 “시” 로 한다.

제2조와 제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은 “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중 “자” 는 “사람” 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는 “외에도” 로 한다.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3)

사천시 조례 제114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와 제5호의 “기타”는 “그 밖에”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4)

제5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는 “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는 “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에 따른 ” , “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를 “생년월일이나” 로 한다.

제9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 “주민등록번호나” 를 “생년월일이나”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는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 “주민등록번호나” 를 “생년월일이나”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의 규정에 의한” 은 “에 따라” 로 한다.

제11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은 “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는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 을 “명” 으로, “자로” 는 “사람으로”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 을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는 “사람” 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는 “그 밖에” 로 “자” 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안” 과 “서 정하는 바에” 를 삭제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동” 을 “같은” 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 를 “기간 내” 로 하고, “범위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1회에” 를 “한차례”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5)

제1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는 “에 따른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6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을 “제26조제1항” 으로, “및” 을 “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6)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7)

[별지 제2호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 명 요 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 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div>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8)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9)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input type="checkbox"/> 인</p>				
<p>※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0)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 구 의 대 상 및 취 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자,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1)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취 청 지			
신 사 청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사 천 시 장 귀하</p>			
<p>※첨부서류 : 증빙자료</p> <p>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2)

사천시 조례 제114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3)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임이사” 를 각각 “대표이사” 로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를 “이사장의 궐위로” 로 하고,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를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조 중 “기업의 협찬금” 을 “민간 협찬금”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4)

사천시 조례 제114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를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에 관하여” 를 “에” 로 한다.

제2조 중 “특산물판매장” 을 “특산물 판매장” 으로 하고,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5)

제3조 중 “면적 1,384m²” 을 “대지면적 1,384제곱미터” 로 하고, “1,619.4 m²” 를 “1,619.4제곱미터” 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 을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를 “시장”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이내의 기간을” 을 “이내로”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지” 를 “부터” 로,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거” 를 “에 따라” 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으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6)

사천시 조례 제114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7)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시장이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환급 등)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2조와 제43조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8)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공원사용조례」는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19)

[별표]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	점 용 요 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 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 한다)비 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면 제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 건축물의 설치	면 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면 제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면 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20)

접 용 대 상	접 용 요 율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단,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8. 광고물의 설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 (다만, 교외지대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할 수 있다.)
19. 상시 영리 행위 ○ 매점 및 건물의 부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다만, 교외지대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할 수 있다.)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21)

사천시 조례 제115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22)

제2조(기능) ①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23)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관리 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사 천 시 공 보

제379호(24)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